

델마 시
행정 정책 및 절차

309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채택일:	2020년 4월 6일
		수정일:	
		페이지:	1 / 5

I. 목적

이 정책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0370조 및 보건안전법(Health & Safety Code) 제116900조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998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도 요금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고객의 수도 서비스 중단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II. 범위

이 정책은 시에서 산출하여 전달한 모든 주거용 수도 서비스 요금이 미납 상태이고 서비스 중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규율합니다.

III. 절차

1. 연체 계정

1.1. 수도 서비스 요금은 2개월에 한 번 또는 시에서 정한 횟수에 따라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수도 서비스 고지서는 청구서 날짜 이후 다음 달 5일, 즉 우편 발송일로부터 최소 19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로 간주되어 10%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청구서를 받은 후, 요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는 60일째 되는 시점까지 납부 약정(Payment Arrangement)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이러한 대안에 대해서는 조항 2 참조).

1.2. 계정이 연체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A. 납부 기한 다음 날,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고객에게 안내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납부가 연체되었고, 이에 따라 시에서 연체료를 부과했다고 알립니다.
- B. 요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파일에 등재된 고객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계정이 연체 상태이며 고객이 이 정책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두 번째 통지가 전달됩니다.
- C. 청구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거주자에게 수도 요금 미납으로 인해 30일 후에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통지문이 직접 전달되고, 해당 계정에 최종 통지(도어 행거) 수수료 \$25가 부과됩니다.
- D. 청구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계정이 아직도 요금 미납 상태이며 계속될 경우 수도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점을 파일에 등재된 고객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델마 시
행정 정책 및 절차

309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채택일:	2020년 4월 6일
		수정일:	
		페이지:	2 / 5

E. 시에서 고객에게 전화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요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53일째 되는 날, 이 정책 사본과 함께 긴급 공지가 해당 건물에 다시 게시되고, 최종 통지(도어 행거) 수수료 \$25가 계정에 부과됩니다.

F. 청구서 날짜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시는 미납으로 인해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것입니다.

2.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2.1 시에서 승인한 납부 약정에 따라 고객이 납부하고, 승인된 납부 약정을 준수하는 동안에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는 요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60일 전에 미납 잔액에 대한 납부 약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이 유효한 동안 모든 후속 수도 요금은 제때 납부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시에서 승인한 납부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 약정 기간 동안 후속 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시는 서비스 중단 최소 5일(영업일 기준) 전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소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서비스 중단 의사를 게시하여 최종 통지한 후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2 추가적으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수도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A. 수도 서비스 중단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해당 주거지 거주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건강상 및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1차 진료 제공자의 증명서를 고객이나 고객의 세입자가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B. 고객이 정상적인 납부 주기 내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다음 중 하나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구성원 중 누구라도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의 수혜자임을 입증:

- CalWorks
- CalFresh 일반 지원
- Medi-Cal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2) 또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임을 선언한 경우, 그리고

델마 시
행정 정책 및 절차

309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채택일:	2020년 4월 6일
		수정일:	
		페이지:	3 / 5

C. 고객은 미납 요금에 대해 납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는 고객에게 납부 약정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위의 조건에 충족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는 고객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검토하고, (1) 납부 약정 참여를 위해 고객의 서명된 동의를 요청합니다. 또는 (2) 고객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또는 (3) 고객이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납부 약정이 허용된 고객이 60일 이상 (a) 납부 약정에 따른 납부 금액을 제때 내지 않거나, (b) 현재 수도 서비스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는 서비스 중단 최소 5일(영업일 기준) 전에 서비스 주소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서비스 중단 의사를 알리는 최종 통지를 게시할 것입니다. 최종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와 관련하여 시에 조사나 검토를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2.4 수도 요금에 대한 분쟁 제기 - 청구서에 나와있는 서비스나 요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려면, 고객은 청구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에 한해, 청구서는 우편 발송 후 10일 후에 고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불만이나 요청은 서면으로 재무부(Finance Department)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의 관리자가 이를 검토하게 되며, 고객이 시로부터 만족할 만한 연장 또는 기타 납부 약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합니다. 시는 재량에 따라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불만이나 조사 요청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불만이나 요청은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 검토가 완료되고 결정 사항이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될 때까지 연체료나 벌금이 고객의 계정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2.5 결정에 대한 항소 - 제2.4조에 따라 적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시 관리자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은 경우, 고객은 시에서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 서비스 책임자/시 서기에게 서면으로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여 시의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통지서를 받은 행정 서비스 책임자/시 서기는 다가올 시의회 회의에서 해당 문제에 관한 심리를 하고, 회의 일자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심리 시간과 장소를 알립니다. 시의회가 내린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고객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시의회가 결정한 경우, 고객은 미납 금액 전액을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객의 불만이 타당하다고 시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시는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정할 것입니다.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델마 시
행정 정책 및 절차

309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채택일:	2020년 4월 6일
		수정일:	
		페이지:	4 / 5

2.6 시와 고객 간 임대인-임차인 상황에서, 시가 고객의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 의사를 통지한 경우, 고객은 이 정책 조항 4에 따라 수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수도 서비스 복구

3.1 정상 영업 시간 동안 재연결이 될 경우 재연결 수수료 \$50가 부과되며, 영업 시간 외에는 실제 인건비와 차량 비용(\$150를 초과하지 않음)이 부과되고,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전액 지불할 경우 수도 서비스가 복구될 수 있습니다.

A. 시청에서 납부.

B.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확인 번호를 받고, 시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

4. 거주자 또는 세입자가 시의 고객이 되기 위한 절차

4.1 이 조항은 주거용 서비스 주소의 부동산 소유주, 임대인,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으로 등재되어 있고, 미납 요금으로 인해 수도 서비스 중단 의사 통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2 각 거주자가 보증금 요건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실제 거주자는 시의 수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 이상의 거주자가 시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해당 수도 계정에 대한 후속 요금을 부담하려고 하거나, 시의 규칙과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주자에 대한 수도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법적으로 가능한 물리적 수단이 시에 있는 경우, 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3 거주자가 연체 계정의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고객이 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기록에 나와있는 미납 계정의 고객이 해당 거주지의 소유주, 관리자 또는 대리인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에는 리스, 임차 계약서, 임차료 영수증, 거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부 서류 또는 시의 재량에 따라 민법 제1962조에 의거해 공개된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5. 기타 조항

5.1 시는 수도 서비스 중단 외에도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청구 또는 법적 조치 제기, 징수기관에 미납 금액 징수 회부 및 해당 수수료 부과 등을 통해 미납 금액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가능한 다른 구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2 시는 미납 이외에도 시의 정책,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델마 시
행정 정책 및 절차

309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채택일:	2020년 4월 6일
		수정일:	
		페이지:	5 / 5

IV. 연락 정보

수도 요금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시의 수도 사업부(Water Utility Division)에 (858) 755-9354로 전화하시거나, finance@delmar.ca.us로 문의하십시오. 시청 접수 창구는 시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금요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니 직접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